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 (內) (事) (件)

特許無効

<大法院 第1部 判決> (1983.2. 8)

裁判長 : 大法院判事 이 일 규

關與法官 : 大法院判事 이 성 렬 · 전 상 석 · 이 회 창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 : 미농상사(주) (경기도 부천시 내동 192)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 : 박 승 목 (서울 관악구 신림 5동 1447-2, B-506)
이 상 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동 476-228)
3. 原審決 : 特許廳 1982.7.30字, 1980年 抗告審判(당) 第40號 審決
4. 主 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被審判請求人등의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

上告理由 第1,2點을 함께 모아 判斷한다.

特許法 第6條第2項은 特許出願前에 그 發明이 屬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자가 같은 第1項 各號에 제기한 發明에 의하여 容易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發明은 위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고 한편 그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의하면 特許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 公언히 實施된 發明 및 特許出願前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發明은 特許를 받을 수 없는 것인바, 일건 記錄에 의하여 原審 인용의 資料를 모아보면 전사지베이스의 一面에 昇華性 잉크로서 소정의 圖型 또는 文字를 울셋트 또는 그라비아 印刷하여 印刷層을 形成한 轉寫紙위에 水溶性 도료를 塗層하고 그 위에 폴리에틸렌 섬유 의 컷·파일을 전기식모하여 되는 昇華性 잉크에 의한 식모 轉寫紙의 製造方法인 이 事件 特許는 그 特許請求의 出願前에 國內의 刊行物에 記載된 바 있는 公知의 技術內容과 거의 같고 轉寫紙베이스에 따라핀계 박리층을 塗層하고 그 위에 친화제와 接着劑를 도층하여 전 사이행시 加熱壓에 의하여 따라핀계층이 熔融되어 박리되는 公知의 技術內容과 이 事件 特許의 따라핀 왁스를 水溶性 호료에 含有하여 전사지베이스에 도층한다는 技術內容의 差異는 이 分野에 通常의 知識을 가진 자이면 쉽게 實施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認定되고 이로 인한 作用効果에 있어서도 特別히 다른 점이 없어 서로 同一類似하여 新規性이나 進歩性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原審이 이와 같은 뜻에서 이 事件 特許가 위 特許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効라고 判示한 措置는 正當하고 이에 審理未盡이나 法理誤解 또는 理由矛盾 등의 違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上告 論旨는 理由가 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參 考 —

抗告審判

1980年 抗告審判(당) 第40號

抗告審判請求人 : 미농상사(주)

被抗告審判請求人 : 박승목, 이상원

主文 : 原審決을 破棄한다. 特許 第5959號는 이를 無効로 한다. 審判 및 抗告審判費用은 被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審 判

1979年 審判 第179號.

審判請求人 : 미농상사(주)

被審判請求人 : 박승목, 이성만

主文 : 本件 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審判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國(外)事(件)

本願意匠이 引用意匠과 類似하다고 判한 事例

<東京高裁 82. 12. 22 判決, 83年(行ケ) 141號>

1. 事件概要

原告는 意匠에 관계되는 物品을 라이타로 하는 의장에 關係서 출원을 하였으나 他人의 先願에 關係되는 의장과 類似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拒絶하는 審決을 받은 것으로 그 取消을 要求한 訴를 提起하였는 바,

① 審決은 本願意匠 및 引用意匠에 關係하여 各各 同一하다고 認定한 構成態樣은 周知의 形態이므로 이 點에서 라이타의 意匠特徵을 認定, 類否判斷의 要素라고 하는 것은 틀린다.

② 本願意匠은 正面背面에 縱溝를 併設한 暗調半透明으로 縱長扁平한 本體케이스 위에 明調의 本體鍵盤이 位置하고 다시 그 위에 中明調의 防風을 設置한 構成과 그 明度를 中心으로 한 Tone의 表現에 新規한 意匠의 特徵이 있으며 이 點이 引用意匠과 判然히 識別된다고 主張하였다.

2. 判決要旨

判決은 下記의 이유에 의하여 原告의 請求를 棄却하였다.

즉 原告가 審決을 取消하려는 理由로 ①에 關係서는 本來 物品의 意匠은 그 全體의 形狀, 模樣, 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에서 오는 綜合의 外觀에 의해 사람의 視覺에 나타나는 美觀을 擲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意匠의 類否를 判斷할 때 一般적으로 알려진 形態의

要素를 分離除外하고 其他의 部分만을 對比하여 結論을 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②에 關係서 本願意匠은 圖面代用의 黑白寫眞을 出願한 것으로서 특히 色彩의 限定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原告가 明暗의 調節로서 區分表現을 할 때에는 黑白寫眞에서 材質의 틀립에서 오는 明暗의 差異(程度)가 나타나는데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種類의 라이타에서 防風部를 金屬으로, 本體部를 透明한 合成樹脂로 하는 構造의 것이 本願出願前 周知였던 것은 本裁判所에 顯著한 事實이며 本體 上部의 當白色에서 보이는 部分도 色彩限定이 없는 以上 이것을 圖示할 때는 引用意匠과 같이 1本の 切線을 水平으로 돌린데 지나지 않는 構成의 것이기 때문에 原告가 主張한 明度中心의 Tone의 表現構成도 그 實態는 材質이 틀리는 데 의한 明暗의 差에 지나지 않는 것에 歸着하고 그 構成區分도 意匠上 그 정도의 特徵적인 要素로 하는 것에는 不足하다.

3. 論評

意匠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圖面代用寫眞에 의해 出願하는 것은 認定하고 있으나 本件과 같이 Tone의 表現構成을 特徵으로 主張하는 意匠에 關係서는 黑白寫眞으로 不充分하며 色彩를 붙인 圖面寫眞으로 出願하여야 할 것이다.